



제312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변경 동의안

1. 제안경과

- 본 동의안은 2025년 5월 3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의 사무범위를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민간위탁(변경) 내용

- 사무명 :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수탁자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민간위탁 기간 : 2024. 01. 01. ~ 2028. 12. 31. (5년)
- 사업비 : 연 1,605,000천원 (국 50%, 도 10%, 시 40%)
- 위탁사무 변경사항
 - 기존 소규모 어린이급식시설 대상에서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시설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

구 분	변경 전(기존)	변경 후
민 간 위 탁 사 무 명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 탁 사 무 (사업대상)	영양사가 없는 <u>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대상</u>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	영양사가 없는 <u>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및 50인 미만 사회복지 급식시설 대상</u>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

2)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 2019. 8. 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2019. 8. 1~ 2023. 12. 31.)
- 2024. 1. 3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재계약)
- 2025. 5. 8. :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 2025. 6. : 의회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심사 및 수탁기관 변경계약 체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관련부서 : 위생과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약의 사무범위가 변경되어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에 50인 미만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위생·영양 관리 지원까지 위탁사무의 업무가 확대·변경된 사항입니다.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 운영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변경 위탁은 타당해 보이나, 사무범위의 확대에 의해 서비스 공급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시 면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센터 설치 및 운영)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제5조(센터 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 <개정 2025.5.8.>
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5.8.>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5.5.8.>
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개정 2025.5.8.>
3.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어린이의 영양관리를 위한 연령별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 <개정 2025.5.8.>
5. 취약계층의 영양관리를 위한 질환별·장애유형별 식단 제공 및 조리법 개발·보급 <신설 2025.5.8.>
6.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 <개정 2025.5.8.>
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5.8.>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급식소”란 취약계층에게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다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식소는 제외한다.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그 위임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5.>

1. 위탁기간의 변경

2.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3. 그 밖에 재동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④ (생략)